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부속실 기간제근로자(행정지원전문직) 채용 공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(행정지원 전문직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8일

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

1. 채용개요

| 채용분야 | 선발예정 인원 | 근무지 | 근로(계약)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간제근로자 (행정지원전문직) | 1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부속실 | 2024. 11. 20. ~ 2025. 7. 31. |

※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기간제법')」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님

※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,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가. 공통 자격

- 최종면접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상인 자(2006. 11. 13. 이전 출생자)
-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
-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나. 채용결격사유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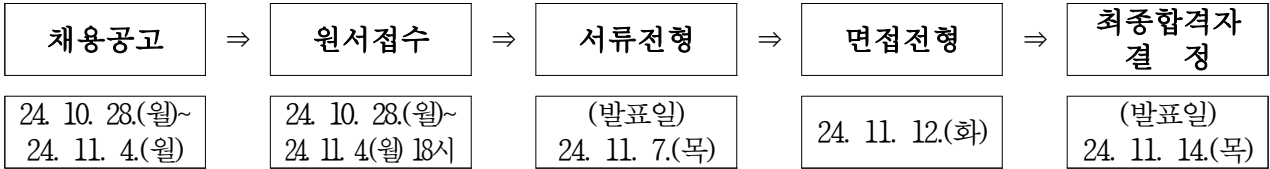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다. 가점사항(원서접수 마감일 현재)

< 사회형평가점 >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※ 전형단계별로 각 만점의 3% 가점을 부가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 또한, 가산 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를 초과할 수 없음

3. 채용절차



가. 원서접수

- 접수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4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
 - 전자우편 : iendc@iendc.go.kr
 - 우편 :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4층 인터넷선거
보도심의위원회 채용담당자 앞 (우) 08806
- 접수기간 : 2024. 10. 28.(월) ~ 2024. 11. 4.(월) 18시까지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방법 중 선택
 - ※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이며, 접수마감시각 이전 도착분에
한하여 유효함.
- 제출서류
 - 지원서(별첨)
 -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첨)
 - ※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이 아닌 경우 보완
요청 예정
 - 사회형평가점 증명서(해당 시)

나. 서류전형

○ 평가방법

| 계 | 평가점수 | | 가점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응시분야 경력 | 자기소개서 | |
| 100점 + 가점 | 40 | 60 | 만점의 3% |

- 서류합격자 발표 : 2024. 11. 7.(목)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
(<http://www.iendc.go.kr>)에 서류합격자 명단 게시 및
면접일정 등 개별 통지(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)

다. 면접전형

- 면접일 : 2024. 11. 12.(화) [개인별 면접시간 상이]
- 평가방법 : 평정요소를 상(20~17점), 중(16~13점), 하(12~0점)으로 계량화하여 평가
 - ※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면접시 신분증 원본 지참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

라.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11. 14.(목)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 게시 및 개별 통지(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)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(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)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선정
-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4. 근로조건

가. 계약기간 : 2024. 11. 20.(수) ~ 2025. 7. 31.(목)

※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나.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) 근무

※ 연장·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 지급

다. 담당직무

-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부속실 업무
- 위원회의 준비 보조 등
- 그 밖에 사무보조에 관한 사무

라. 근무지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4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부속실

※ 주소 :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

마. 보 수

- 1일당 84,620원(일급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.)
 - ※ 2025년도 인부임 단가 변경 시 변경된 단가에 따라 보수 지급
- 1일 8시간,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등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름.
- 그 외의 사항은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.

5. 채용서류의 반환

가. 청구권자 : 응시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
※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,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님.

나. 청구기한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(2024. 12. 14.) 이내

다. 반환대상

- 지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
- 가점 증명서 사본

라. 청구·반환방법

-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☎02-3299-3811로 문의)
-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

마. 참고사항 :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간 이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※ 단, 인사감사 등의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6.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)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3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7. 기타 유의사항

- 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.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.
- 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[2024. 11. 4.(월) 18시]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(미지참시 응시불가)
 - ※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(사진 포함, 유효기간 내)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(☎02-3299-3811) 담당자에게 문의

- 붙임 1. 지원서 서식(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함)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(필요시)